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5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정재환, 홍영진, 문기호,
문희성, 김태욱, 박경흠,
이명녀

1. 개정이유

- 가.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
- 나.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다. 그 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조)
- 나. 외국인 정의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 다.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교육비
- 라. 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삭제·변경(안 제10조, 제12조)
- 마. 그 밖에 용어 및 오타 등 미비점 정비(안 제3조제1항, 제7조, 제15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11. 25. ~ 12. 2.(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교육비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탁형운영”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 ----- ----- ----- -----.</p>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
| <p>1. (생략)</p> <p>2. "외국인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p> <p>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p> | <p>1. (현행과 같음)</p> <p>2. "외국인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p> <p>3. ----- 외국인주민----- -----</p> |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
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
동체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
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 중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
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

4.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

주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범위)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
동의 보육·교육비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삭제>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15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
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탁하여 운영-----

-----.

[붙임]

관 계 법 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아동
- 대상인원

(2025. 11월 기준)

| 연령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
| 인원 | 2 | 6 | 4 | 2 | 2 | 2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예산액 | | 89,640 | 95,903 | 102,616 | 109,799 | 117,485 | 515,443 |

※ 산출내역: 2025년 정부지원 보육료 0세 567천원, 1세 500천원, 2세 414천원, 3~5세 280천원
대상인원별 보육료 × 12개월(매년 7% 증가 추산)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연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기금 | | | | | | | |
| 구비 | | 89,640 | 95,903 | 102,616 | 109,799 | 117,485 | 515,443 |
| 기타 | | | | | | | |
| 합계 | | 89,640 | 95,903 | 102,616 | 109,799 | 117,485 | 515,443 |

1. 부대의견: 해당없음
2. 협의사항: 예산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3. 작성자: 사회복지8급 남혜인(052-290-4926)